



제 3 4 0 회 정례회
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
2023. 06. 19.(월)

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275
제안일자	2023. 05. 31.
회부일자	2023. 06. 02.

행정보건복지위원회
전문위원실

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최태림 의원 외 11명

2. 제안이유
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과 응급의료장비 설치 등 응급의료에 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함

3. 주요내용

- 경상북도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6조)
-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- 도지사가 응급의료에 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8조)

4. 관련부서 협의

-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(법무혁신담당관)
-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(감사관)

5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
- 예고기간 : 2023.06.02. ~ 06.12.(경상북도 공고 제2023-59호)
- 의견제출 : 없음

6. 검토의견

□ 제안이유 및 필요성

- 「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」는 2016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, 상위법령인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과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본 개정안은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- 본 조례안은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,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,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안 제1조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는

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

○ 안 제2조는 응급환자의 보호,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·운영, 응급의료 시책 마련 및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있는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○ 안 제3조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 13조의3¹⁾에 따라 경상북도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○ 안 제4조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 13조의6제1항²⁾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안 제5조는 경상북도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
1) 제13조의3(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) ① 시·**도지사**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**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**

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·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응급환자 발생 현황,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
2.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
3.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
4.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·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
5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·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제13조의6(시·도응급의료위원회)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응급의료위원회(이하 “시·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~ ⑤ (생략)

- 이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 13조의6제5항3)과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4)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.

○ 안 제6조는 경상북도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 13조의6제5항과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의25)에 따라 경상북도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 입니다.

- 이는 응급의료 정책개발 및 지원, 응급의료 정책연구 및 통계관리, 평가지원,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, 훈련 및 교육 지원

3) 제13조의6(시·도응급의료위원회) ① ~ ② (생략)

⑤ 시·도위원회 및 시·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4) 제7조(시·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)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시·도응급의료위원회(이하 “시·도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

2.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

3.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

4. 시·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5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

6.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③ 시·도지사는 시·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5) 제7조의2(시·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·운영)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시·도 응급의료지원단(이하 이 조에서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할 것

2. 지원단의 단장은 시·도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맡도록 할 것. 이 경우 필요하면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다.

등을 경상북도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 13조의6제3항6)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- 또한, '경상북도응급의료지원단'을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7)에 따라 설치된 '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'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 13조의 6제3항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안 제7조는 도지사가 도민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의 응급 의료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조8)와 제14조제2항9)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요령,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의 알권리와 교육·홍보를 계획하고 수행 및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·운영, 응급장비 설치, 응급의료 치료 활동 등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

6) 제13조의6(시·도응급의료위원회) ① ~ ② (생략)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의 시·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·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~ ⑤ (생략)

7) 제22조(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·운영) ① 시·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8) 제4조(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)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,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.

9) 제14조(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) ① (생략)

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·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·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~ ④ (생략)

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10)에 따른 시책의 마련과 그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, 응급의료기관등의 설치·운영에 60억7천5백만원,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에 8천3백만원,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에 2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.

- 안 제9조는 도지사 및 응급의료관련 업무 종사자 및 종사했던 사람에 관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10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□ 종합의견

- 최근 응급환자가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전문 의료인력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상위법령인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과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현실에 맞는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.

10) 제13조(응급의료의 제공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,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·운영,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,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